

의안번호	제 48 호	의결사항
의결년월일	1997.	

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7. 12 .

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(안)

의안 번호	48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'97. 11.
제출자 : 사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는 설치, 구성, 기능,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회의등을 제정함.

3. 법적근거

-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(대통령령 제15119호 1996. 7. 13)

4. 제정(안) : 따로 불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설치)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천시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천시 부시장이 된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1. 지역주민

2.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

3. 보건의료관련전문가

4. 관계공무원

③간사는 사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

2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7조(회의등)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